

제244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
(교통건설국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
전문위원 추병수

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

검 토 보 고

I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325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3. 5. 31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5. 31.

II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제150조,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금천구 2022회계연도 세입·세출 결산에 대하여 금천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.

III. 참고사항

○ 관련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,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10조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

○ 관련서류 : 2022회계연도 결산서(안)

IV. 2022회계연도 교통건설국 결산

1. 일반회계 결산 총괄

가. 세입 총괄

(단위:원)

구분	예산현액	징수결정액(A)	세입결산액(B)	징수율 (B/A)
계	13,264,208,000	14,281,888,840	13,668,287,010	95.7%
교통행정과	2,430,395,000	3,149,166,680	2,560,611,000	81.3%
건설행정과	1,831,213,000	2,102,944,430	2,077,898,280	98.8%
도 로 과	3,741,200,000	3,767,334,530	3,767,334,530	100%
치 수 과	5,261,400,000	5,262,443,200	5,262,443,200	100%

나. 세출 총괄

(단위:원)

부서명	예산현액(A)	지출액(B)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
				금액	집행률 (B/A)
계	34,005,035,621	21,990,849,922	10,287,679,670	1,442,174,519	64.6%
교통행정과	2,866,856,000	2,383,717,410	98,583,000	377,266,570	83.1%
건설행정과	5,325,134,000	779,652,442	4,464,277,690	81,010,738	14.6%
도 로 과	16,554,652,621	12,434,159,170	3,163,488,950	682,496,141	75.1%
치 수 과	9,258,393,000	6,393,320,900	2,561,330,030	301,401,070	69%

다. 집행잔액

(단위 : 원)

부서명	예산현액	집행잔액	사유별		
			보조금 정산잔액	예산절감액	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 생
			낙찰차액	지출잔액	예비비
계	34,005,035,621	1,442,174,519	171,609,891	0	107,614,300
			210,596,180	952,354,148	0
교통행정과	2,866,856,000	377,266,570	37,050		1,062,000
			35,224,410	340,943,110	
건설행정과	5,325,134,000	81,010,738	142,370		1,580,000
				79,288,368	
도로과	16,554,652,621	682,496,141	153,117,931	0	103,232,300
			174,651,200	251,494,710	0
치수과	9,258,393,000	301,401,070	18,312,540	0	1,740,000
			720,570	280,627,960	0

라. 교통건설국 집행률 저조사업

(단위:원)

부서명	세부사업명	예산액(가)	지출액(나)	이월액(다)	집행잔액 (가-나,다)	집행률 (나/가)
교통행정과	계	407,473,000	250,462,830	77,728,000	79,282,170	61.47%
	교통개선사업	311,040,000	196,493,260	77,728,000	36,818,740	63.17%
	자동차관련 과태료징수	96,433,000	53,969,570	0	42,463,430	55.97%
주차관리과	계	10,133,462,700	2,289,336,040	3,386,267,540	4,457,859,120	22.6%
	단속업무차량 운영 및 관리	31,060,000	19,450,590	0	11,609,410	62.62
	공영주차장 건설	7,610,818,700	1,804,568,990	1,500,000,000	4,306,249,710	23.71

	독산2동 마을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사업	2,351,584,000	465,316,460	1,886,267,540	0	19.79
	예 비 비	140,000,000	0	0	140,000,000	0%
건설 행정 과	계	5,041,151,000	534,501,310	4,464,277,690	42,372,000	10.61%
	국공유 행정재산 관리	11,778,000	5,953,100	0	5,824,900	50.54%
	독산로 지중화 사업	5,025,068,000	525,946,310	4,464,277,690	34,844,000	10.47%
	손실보상 관리	4,305,000	2,601,900	0	1,703,100	60.44%
도 로 과	계	6,787,816,600	4,098,240,550	2,276,567,230	413,008,820	60.38%
	도로 계획 및 개설사업 추진	550,572,000	279,716,550	0	270,855,450	50.8%
	탐골로 도로구조 개선	100,000,000	34,100,000	0	65,900,000	34.1%
	관내 도로보수	6,137,244,600	3,784,424,000	2,276,567,230	76,253,370	61.66%
치 수 과	계	2,697,966,000	112,279,160	2,520,000,000	65,686,840	4.17%
	안양천 물놀이 시설 유지관리	177,966,000	112,279,160	0	65,686,840	63.09%
	안양천 기초환경 정비	2,520,000,000	0	2,520,000,000	0	0%

※ 집행률은 예산액 대비 지출액을 기준으로 산출(집행률 70% 미만 사업)

2. 예산의 전용

○ 예산전용 현황 : 해당사항 없음.

3. 다음연도 이월사업비

(단위:천원)

구 분	계		명시이월		사고이월	
	건수	금 액	건수	금 액	건수	금 액
계	14	10,287,679	5	8,386,230	9	1,901,449
교통행정과	2	98,583	-	-	2	98,583
건설행정과	2	4,464,277	1	3,939,257	1	525,020
도로과	8	3,163,489	3	1,926,973	5	1,236,516
치수과	2	2,561,330	1	2,520,000	1	41,330

4. 기금 결산

(단위:원)

구 분	전년도말 조성액(A)	당 해 연 도 증 감 액			당해연도말 조 성 액
		계B(C-D)	조성액(C)	사용액(D)	
계	3,621,566,915	62,300,230	1,842,337,494	1,639,540,690	3,824,363,719
옥외광고발전기금	1,137,837,960	△4,159,300	160,313,050	164,472,350	1,133,678,660
도로굴착복구기금	2,483,728,955	206,956,104	1,682,024,444	1,475,068,340	2,690,685,059

5.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·세출 결산

가. 세입결산

(단위: 원)

구분	예산현액	징수결정액(A)	세입결산액(B)	징수율(B/A)
계	16,700,198,700	22,910,652,523	15,271,946,713	66.6%
세외수입	5,309,553,000	12,394,674,110	4,755,968,300	38.3%
조정교부금	700,000,000			
보조금	1,641,240,000	1,641,240,000	1,641,240,000	100%
보전수입등 맞내부거래	9,049,405,700	8,874,738,413	8,874,738,413	100%

나. 세출결산

(단위: 원)

부서명	예산현액(A)	지출액(B)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
				금액	집행률(B/A)
주차관리과	16,700,198,700	8,123,520,440	3,386,267,540	5,166,511,380	48.6

다. 예산의 전용 : 해당사항 없음

라. 다음연도 이월사업비

(단위:천원)

구분	계		명시이월		사고이월	
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
계	3	3,386,267	2	2,200,000	1	1,186,267
주차관리과	3	3,386,267	2	2,200,000	1	1,186,267

VI. 검토의견

1. 일반회계 세입·세출 결산

- 2022회계년도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136억 6,828만원으로 징수를 95.7%이며
- 일반회계 지출액은 219억 9,084만원으로,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64.68%이며, 다음연도 이월액은 102억 8,767만원이며, 집행잔액은 14억 4,217만원임.

2. 예산의 전용 : 해당사항 없음

3. 다음연도 이월사업비

- 「지방재정법」제50조에 따른 교통건설국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면
 - 명시이월은 총 5건 83억 8,623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음.
 - 사고이월은 총 9건 19억 144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음.

4. 기금 결산

- 2022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기금은 2개이며,
 - 전년도말 조성액은 36억 2,156만원이며
 - 당해연도 증감액은 6,230만원으로
 -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8억 2,436만원임.

5.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·세출 결산

-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

- 예산현액은 167억 19만8천원이고
- 징수결정액은 229억 1,065만원이며
- 수납액은 152억 7,194만원임.

○ 세출예산의 예산현액은 167억 19만8천원이며, 지출액 81억 2,35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1억 6,651만원임.

○ 주차장 특별회계 이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,

- 명시이월은 총 2건 22억원이 명시이월 되었음.
- 사고이월은 총 1건 11억 8,626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음.

6. 검토 의견

○ 2022회계연도 교통건설국 결산 검토 결과,

예산 대비 집행률이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이나, 매년 반복 집행되는 소요경비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의 적정성, 사업 효과를 면밀하게 따져야 할 것이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되풀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관계법령

☞ 예산·결산 자료

「지방자치법」 [시행 2023. 6. 7.] [법률 제19428호, 2023. 6. 7., 일부개정]

제150조(결산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,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·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·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,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「지방재정법」 [시행 2023. 5. 16.] [법률 제19031호, 2022. 11. 15., 일부개정]

제49조(예산의 전용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·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,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.

제50조(세출예산의 이월)

-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·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-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 1.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
 2.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

- 오랜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
3. 공익·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
4.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
-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레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- ④ 제1항 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 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 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.

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

[시행 2022. 1. 13.] [대통령령 제32223호, 2021. 12. 16., 타법개정]

- 제10조(결산서 등의 제출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(이하 “감사위원”이라 한다)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12. 16.>
-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감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 부터 7일 이내에 감사의견서와 감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

☞ 기금 관련 자료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., 타법개정]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

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.5.30]